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경제형벌 규정의 정비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190호)

2024. 9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 부
2. 제 안 일 : 2024. 6. 28.
3. 회 부 일 : 2024. 7.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투자자 또는 수익자로부터 장부·서류의 열람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도 시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해당 형벌에 처하도록 하며,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 펀드·신탁·외국펀드의 장부·서류의 열람 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바로 형벌을 받지 않고 시정명령 후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고(안 제446조제16호), ②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제제처분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조정하려는 것임(제446조제54호 삭제 및 안제449조제1항제44호).¹⁾

현행	개정안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6조(벌칙) ----- ----- ----- -----.
1. 2. 삭제	
3. ~ 15. (생략)	3. ~ 15. (현행과 같음)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16. ----- ----- ----- 제280조 제3항에 따른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제42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7. ~ 53의3. (생략)	17. ~ 53의3. (현행과 같음)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	<삭제>

1) 개정안은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총46개, '23.10.11.발표)」의 일환으로 제출되었음.

현행	개정안
<u>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u> 55. ~ 63. (생략)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2. 삭제 13. ~ 43. (생략)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 8, 제325조, <u>제335조의 7</u> 또는 제379조를 <u>위반하여</u> 명칭을 사용한 자 44의2. ~ 49. (생략) ② ~ ④ (생략)	55. ~ 63. (현행과 같음) 제449조(과태료) ① ----- ----- ----- ---. 13. ~ 43. (현행과 같음) 44. ----- ----- <u>제335조의 7, 제338조, 제356조</u> ----- ----- <u>위반하여</u> 해당 <u>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u> ----- ----- 44의2. ~ 4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91조²⁾, 제113조³⁾, 제186조⁴⁾ 및 제280조⁵⁾에서는 투자자 또는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3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익자(이하 “투자자 등”)가 그 투자자 등에 관련된 펀드·신탁·외국펀드(이하 “펀드 등”)에 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투자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제420조⁶⁾) 및 형벌 부과(제446조⁷⁾)의 대상임.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 행사에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2. 제235조에 따라 투자회사등의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3. 제201조제4항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② 제87조 및 제89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87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등이 의결권 행사를 집합투자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보고, 제89조제1항 중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은 “투자회사등은”으로 보며, 제90조 및 제92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집합투자업자는”은 각각 “투자회사등은”으로 보고, 제91조 중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투자회사등(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등”으로 본다.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③ 투자자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 각 호(제6호를 제외한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로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3. 위법행위의 시정명령 또는 중지명령

[별표1] 101. 제91조제1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33. 제1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83. 투자회사등의 법인이사·업무집행사원·업무집행자·업무집행조합원이 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87조, 제89조, 제90조제1항·제2항, 제91조제1항·제3항 또는 제92조를 위반한 경우

275.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 또는 교부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이는 투자자 등으로 하여금 펀드 등의 관리·운용의 적정성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임.

□ 그런데, 열람·교부 청구 거절에 대하여 즉시 형벌을 부과하도록 하는 것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 금융위원회는 열람 거절에 대해 형벌 없이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유사 입법례⁸⁾ 등을 고려할 때, 열람·교부 청구 거절에 대해 즉시 형벌을 부과하기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하여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 이에 개정안은 투자자 등의 열람·교부 청구의 거절에 대해 먼저 시정 명령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先 행정제재, 後 형벌 부과) 제재처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6. 제91조제1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13조제1항 또는 제280조제3항을 위반하여 열람이나 교부 청구를 거절한 자

8)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7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 시정명령이 법 위반에 대하여 허가취소·영업정지와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 또는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되기 전 영업자에게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것⁹⁾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임.

□ 한편, 현행법 제338조¹⁰⁾, 제356조¹¹⁾에서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제446조¹²⁾)하고 있음.

○ 이는 자격이 없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자금중개회사의 사칭이나 유사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협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거래소 등이 아닌 자가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¹³⁾하고 있어 다른 법률과의

9)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321.

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종합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56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는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4. 제338조 또는 제356조를 위반하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4조(유사명칭 사용의 금지) 협회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협회”, “증권협회”, “선물협회”, “자산운용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5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3조의8(유사명칭 사용 금지)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아닌 자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 “금융투자상품청산”, “증권거래청산”, “증권청산”, “파생상품거래청산”, “파생상품청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평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종합금융회사 또는 자금중개회사가 아닌 자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을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과의 정합성·일관성을 제고하고 의무위반의 정도와 제재수단 간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

○ 행정목적 달성에 대한 침해가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 지나친 형사처벌을 방지하고,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에서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행위는 과태료의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¹⁴⁾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참고로, 최근 3년간 열람·교부 청구를 거절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여 시정명령 또는 금융감독원의 검찰통보 등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제325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증권금융회사가 아닌 자는 “증권금융”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5조의7(유사명칭 사용 금지) 신용평가회사가 아닌 자는 신용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9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4. 제284조, 제295조, 제323조의8, 제325조, 제335조의7 또는 제379조를 위반하여 명칭을 사용한 자

14) 국회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제」, 2019., p.694.

문 의 처
02)6788-5111